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2021. 12. 9.  
사회건설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21년 11월 15일
- 나. 발 의 자: 권영식 의원 외 5명
- 다. 회부일자: 2021년 11월 19일
- 라. 상정일자: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 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1. 11. 23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권영식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  - 지진재해에 대한 영등포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의 효율적인 향상에 필요한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, 지진방재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 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 (안 제1조 ~ 안 제2조)
  - 구청장의 책무 규정 (안 제3조)
  -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(안 제4조)
  - 지진방재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5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원배)

-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에 대한 영등포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의 효율적인 향상에 필요한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, 지진방재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 내용은
  - 조례명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」 이고 6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음.
  -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,
  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
  - 안 제4조에서는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,
  - 안 제5조에서는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본 조례안은
  -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에 따라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에 필요한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, 지진 방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재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으로,
  - 상위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,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**지진·지진해일의 관측·예방 대비 및 대응, 내진대책,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**
  -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 및 근거는 타당하며, 영등포구가 보다 체계적인 지진방재시행 계획과 각종 실효성 있는 방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.

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

(권영식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19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: 2021년 11월 일

발의자: 권영식 의원 외 5명

## 1. 제안이유

지진재해에 대한 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의 효율적인 향상에 필요한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, 지진방재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- 다.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(안 제4조)
- 라. 지진방재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조)

## 3. 제정안 : “별첨”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필요 시 반영
- 다. 입법예고(2021. 11. 12. ~ 11. 16.) : 의견 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지진관련 사업범위, 내용,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진방재의 효율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지진재해”란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.
2. “지진방재”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.

**제3조(구청장의 책무)** ① 구청장은 지진방재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)**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지진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,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확보 등에 관한 사항
2.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·운용 등에 관한 사항
3.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·운영·관리 등에 관한 사항

4. 지진대피장소 지정·관리 및 지진 훈련·교육·홍보 등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5조(지진방재사업)** 구청장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
2. 공공·민간 지진방재 교육·홍보자료 개발
3.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6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